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9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0.

발 의 자:김태호·김성원·임이자

김위상 • 박충권 • 서범수

이상회 · 최형두 · 조승환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·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부 시·군·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·군·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"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"을 "지역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	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
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	
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	
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	
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교육부장	
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	
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	
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	
(이하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및	
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<u>지방육</u>	<u>지역 주</u>
<u>아종합지원센터를</u> 설치·운영	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	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	<u>이상</u>
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	
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・운	
영할 수 있다.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